국유림 대상 산림경영인증 시범사업 결과보고

➢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표준(안)의 현장 적용가능성을 평가하고, 한국산림인증 제도에 대한 참여·관심도 확산 등 2016년 인증제도 본격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대 상** : 국유림 2개소(홍천, 삼척)
- **(홍천관리소)** 가리산 선도산림경영단지 6,562ha (25개 임반, 573개 소반)
- **(삼척관리소)** 교가경영계획구 21,044ha (150개 임반 790개 소반)

○ **기 간** : 홍천(5.7 ~ 8, 2일간), 삼척(5.13 ~ 15, 3일간)

○ **주 체** : 표준안평가단

○ **목 적** : ①산림경영인증 표준(안)에 대한 현장 적용성 평가(표준안 보완)
②표준(안)에 대한 산림경영의 적합성 여부 평가(시범인증 심사)

○ **참석자** :
- 홍천(15) : 산림청, 한국산림기능인협회, 한국산림기술사협회, 한국 SGS, 엔스타알앤씨, 자연환경국민신탁, 동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 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
- 삼척(14) : 산림청, 생명의 숲, 산림조합중앙회, 엔스타알앤씨,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

Ⅱ. 주요 결과

1. 산림경영인증 표준(안) 현장 적용성 평가를 통한 표준(안) 보안

○ 표준 지표별 세부사항에 대한 해설 및 확인사항을 한층 더 명확히 제시할 필요
-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 협약 목록, 관련 법률 현황 목록, 국제적으로 금지하는 화학약품 목록 등을 진흥원에서 정리하여 제시
- 기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은 지표에 대하여 표준분과위에서 재논의 필요

○ 표준 상에 나오는 용어에 대한 정의 추가 필요

○ 의무지표('하여야한다') 및 권고지표('한다')에 대한 구분 필요

○ 심사 순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준별 순서 재조정 필요

○ 세부 지표별 검토 의견 : 붙임 4 참고

2. 시범인증 심사를 통한 산림경영의 적합성 여부 평가(부적합 사항)

○ **홍천 부적합 사항 : 3건 (4개 지표)**

- (1.8) 생태계에 지속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숲 가꾸기와 벌채 작업을 실행하여야 하나, 사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하는 체계와 절차가 부재하여 현행 시업이 생태계에 지속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하기 어려움.
- (1.9)(1.3) 경영 목표에 따라 야생동물의 밀도가 산림 갱신, 생장 및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보호되어야 하는 재래종이나 멸종 위기 종의 서식지를 포함한 지역을 포함한 지도 작성 등을 통한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하지만 야생동물에 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음.
- (3.6) 산림작업 중 기름의 유출이나 산림에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버리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하고,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폐기물은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하나 작업 후 현장에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음.

○ **삼척 부적합 사항 : 4건 (10개 지표)**

- (1.3) 야생동물을 포함한 보호 또는 멸종 위기 종 목록이 정리되어 있어야 하나, 야생동물과 관련한 보호체계가 확인되지 않음.
- (1.8)(2.5)(2.6)(3.3)(3.4)(3.7)(4.2) 해당 지표에서 요구하는 모니터링 혹은 환경적 영향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 (3.7) 기반시설 설치 전후에 대한 영향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완충지대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음.
  - * (4.2) 추가적인 관찰사항으로 친환경오일 등을 사용하는 것을 현장에서 인식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인지시키고 가능한 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필요함.
- (1.9) 야생동물의 밀도가 산림 갱신, 생장 및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야생동물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2.2) 천연갱신이 가능한 지역의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기술적인 문제와 세심한 관리를 요하는 등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최근에 교가경영계획구 내에서 천연갱신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음.

3. 현장 의견

○ 환경적 영향 평가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을 진흥원에서 강구하여 제시하여 주기 바람.

○ 친환경오일이나 화학약품 구매를 위해서는 산림사업 품셈을 수정하여 이에 맞게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

○ 심사가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고 현장의 산림경영 활동에서 우러나와서 실제 산림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가 친환경인증이라는 것을 올바로 인식해 나갈 수 있도록 표준안 상에 산림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만한 지표들로만 구성되어야 함.

○ 국내 산림분야에서는 동물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환경영향 평가 등에 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듯함. 임업적 관점에서의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야 하고, 이 가이드라인 하에서 환경적 영향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대학이나 과학원 등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 사업이 이루어져야 함.

○ 현장 관리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지표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설이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고, 인증 취득 및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진흥원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함.

4. 기타 토의

○ **시범인증서 발행 여부** 등에 관하여 표준분과위원회에서 재논의 필요

- 아직 확정된 표준이 아니라 계속 보완될 여지가 있는 표준안인데 이를 토대로 시범인증서를 발행할 지의 가부를 표준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시범인증서를 발행하게 된다면 발행주체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시범사업의 기대효과(혜택)**를 적절히 계획하여 홍보 필요

- 시범인증에 참여한 산주 및 관계기관에는 분명한 혜택이 있어야 함.
- 사유림 소유자에게 지나친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것은 추후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시범사업에 대한 명확한 설명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피심사 대상 조직 등 관계기관에 **산림인증에 관한 교육 제공** 필요

- 심사 내용이 어려우므로 심사절차 및 준비사항 등에 관한 교육이 필요함.
- 피심사 조직을 위한 인증 취득·관리매뉴얼 제공이 필요함.

○ **사유림 경영에 적합한 간소화된 표준안** 별도 마련 필요

○ 산림청에서 관할하지 않는 야생동물에 관한 지표나 산림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기 어려운 모니터링 등에 관한 지표 이행에 있어 진흥원의 지원방안 고민 필요

○ 일반 오일과 친환경 오일의 토양유입에 대한 영향을 비교분석한 연구결과가 국내(해외)에 있는지 확인하여 진흥원에서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 필요

* **(참고)** 국유림 시범사업 대상지 별 심사 개요

장소	진행순서	심사인원
홍천	(1일차)서류심사 (2일차)현장심사, 정리	심사팀 6명(2개팀 분리)
삼척	(1일차)서류심사 (2일차)서류/현장심사 (3일차)서류심사, 정리	심사팀 5명(1개팀)

Ⅲ. 향후 계획

○ **공·사유림 대상 산림경영인증** 시범사업 추진(6월~)

- 공유림(강원도 화천) 대상 산림경영인증 시범사업(6월 중)
- 사유림 산림경영인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시범사업(6월 중)

○ **제2차 표준분과위원회 개최**를 통한 산림경영인증 표준(안) 보완(7월 중)

○ **CoC인증 시범사업 추진**(7~10월)

- CoC인증 시범사업 대상 업체 선정(7~8월)

○ 산림인증 표준(안) 관련 **공개 의견 수렴**(8~10월)

- 산림경영인증 표준(안) 공개 의견 수렴(8~9월)
- CoC인증 표준(안) 공개 의견 수렴(9~10월)

○ 제3차 표준분과위원회 개최를 통한 **산림인증 표준(안) 최종 검토**(11월)

○ 산림인증 표준(안) **최종 승인**(12월)

붙임 : 산림경영인증표준(안) 주요 검토의견 1부. 끝.

< 붙임 >

산림경영인증표준(안) 주요 검토의견

구 분	현행 지표	재검토 필요사항	지표해설 및 확인사항
1.2	산림 생태계의 임상별, 천이단계별, 영급별 면적 및 구성비 등 산림 생태계 현황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천이단계별” 삭제 – 현재 자연 천이단계별 산림 조사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어려움	
1.5	신규조림 및 재조림 시에는 적정한 임목축적 수준과 산림경영 목표 및 현지 조건에 적합한 수종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a. 가급적이면 현지 조건에 잘 적응한 재래종 또는 산지적응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b.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경우 혹은 환경적·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외래종 또는 변종을 이용한다.	· 재래종, 산지적응종, 외래종, 변종에 대한 정의 제시(특히 외래종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 들어온 종인지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종인지의 경계가 모호함) – 외래종, 도입수종의 경우 산지적응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설정 필요	
1.6	유전자 변형에 의한 나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유전자 변형에 의한 나무” 에 대한 의미를 현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워하므로 이에 대한 해설 추가
1.8	생태계에 지속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숲 가꾸기와 벌채 작업을 실행하여야 한다.		· 현행법상 숲가꾸기 벌채작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검토(현장 실행이 어려움)
1.9	경영 목표에 따라 야생동물의 밀도가 산림 갱신, 생장 및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확인사항에서 “산림자원 조사 또는 목록”은 불필요하므로 제외 · 확인사항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환경평가 기록”을 요구해야 하는지 검토 – 산림청이 야생동물 업무를 관장하지 않는 상황(환경부 소관)에서 야생동물 밀도 등을 조사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음. 다만, 조림 활착률 조사 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등을 모니터링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런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1.10	고사목, 속이 빈 나무, 오래된 수풀과 희귀목은 주변 생태계와 산림의 안정성 및 건강을 고려하여 생물 다양성을 보장하는 안정장치의 일환으로 원래의 상태(본수와 분포)를 유지하도록 한다.	· “본수와 분포” 삭제(원문 확인) – 본수와 분포까지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1.7	산림경영시업이 가능한 경우 이령림 및 혼효림과 같이 수평적·수직적 구조의 다양성, 종 다양성 및 경관 다양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산림경영시업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가능한 한, 이령림 및 혼효림과 같이~” 로 자구 수정	

2.2	목재 및 비목재임산물과 서비스를 지속가능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산림의 생산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경제적·사회적·생태적 지속성을 고려하면서 산림 생산과 관련된 장기계획과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b. 산림경영계획에 경제림 면적과 비율을 명시하고, 이를 지도상에 명확히 표시하여 관리한다. c. 산림생태계의 생산 잠재력 및 현재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d. 벌채지는 현행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재조림하고, 적지적수의 원칙을 적용하여 재조림하되, 천연갱신이 가능한 지역의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	· d) “천연갱신” 은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필요한 문구인지 검토(원문 확인) – 천연갱신은 인공갱신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일뿐만 아니라 조림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음	
2.3	산림의 기능을 고려하여 목재 및 비목재임산물과 서비스의 생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a. 매년 생산하는 목재 및 비목재임산물과 서비스의 종류 및 생산량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b. 목재 및 비목재임산물과 서비스의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c. 특정 임산물 생산에 대한 의존을 피하고 지속가능한 생산 수준을 고려한다.		· “특정 임산물” 의 의미가 모호하므로 의미 해설 추가
2.4	해당 산림경영단위 내에 적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해당 “제도” 가 의미 하는 바 혹은 예시를 명확히 제시하고, 지표 불필요 시 삭제 (원문 확인)	
2.5	목재 및 비목재임산물의 생산, 숲 가꾸기, 산림 갱신 등은 관련 법률 및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해당 산림의 생산력을	· a) 천연림의 정의를 명확히 제시 – 우리나라에는 국제적 기준에서 일컫는	· b) 환경영향평가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검토

	감소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a. 산림경영은 천연림의 보전과 갱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b. 산림경영은 산림의 생태적 환경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c. 연간벌채량은 목재의 생장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하고 이에 맞게 생산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해당 산림의 재생산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목재 및 비목재임산물을 생산하도록 한다.	천연림(원시림)이 거의 없으므로 지표상의 천연림이 국제적 기준에서의 원시림을 의미하는지 혹은 우리나라에 대부분 존재하는 천연갱신에 의해 조성된 산림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제시 · c) “비목재임산물” 삭제 – 목재 생산량과 임지의 재생산능력 수준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비목재임산물 생산량은 그렇지 않음	(현장 실행이 어려움)
2.6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적절한 기반시설이 계획・설치・유지되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검토(현장 실행이 어려움)
3.2	산림경영단위 내의 임상 및 주요 수종과 식생종류의 비율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산림작업을 시행한다. b. 숲가꾸기, 간벌 등의 시업매뉴얼에 따라 주기적인 육림작업을 시행한다.	· “임상 및 주요 수종과 식생종류” 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원문 확인)	
3.3	산림경영단위 내의 시업제한지 및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그 위치와 면적을 도면상에 표시하여 해당지역의 생태계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생태계 교란” 을 “생태계 피해” 로 변경 – “생태계 교란” 은 “생태계 피해” 의 한 종류이므로 포괄적으로 표현할 필요	
3.4	산림생태계의 건강과 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만한 인자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나 방법을 마련하여야 하고, 해당 인자가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산불, 병해충 등 재해에 대한 방제 매뉴얼을 보유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되, 가급적이면 살충제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 a) “생물학적 예방책” 이라는 표현보다 “친환경적 예방책” 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수정 – “친환경적 예방책” 의 한 가지 종류가 “생물학적 예방책” 이 될 수 있음	· 천적 이용, 비닐 도포 등 친환경적(생물학적) 예방책에 대한 예시를 지표해설 부분에 추가

	경제적 한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생물학적 예방책을 사용한다. b. 산불, 병해충 등 재해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c. 산불, 병해충, 가뭄, 태풍 및 기타 재해가 발생한 시점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d.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복구한다. e. 산림생태계의 건강과 활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3.5	국제 협약 및 국내 법규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화학비료, 살충제와 고독성 살충제의 사용은 금지하여야 한다.		· 지표해설 상에 국제 협약 및 국내 법규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화학비료 목록 제시
3.6	나무와 토양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숲 가꾸기, 벌채, 운재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a. 벌채작업과 관련한 기술지침을 구비하도록 하고, 벌채 시 발생하는 폐잔재가 최소화되도록 벌채방법을 채택한다. b. 산림작업 중 기름의 유출이나 산림에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버리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하고, 폐기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되 가급적이면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 a) 폐잔재의 정의를 명확히 제시 – 폐잔재는 자원활용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유기질비료로써 가치가 높지만, 산불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계곡 등으로 유입되어 2차 재해를 유발하는 등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	
3.7	임도시공, 사방사업 및 기타 모든 물리적인 교란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a. 수변구역이나 습지 주변에 임도 및 기타 장애물의 설치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산림토목작업 시 토양·수자원·생물다양성 및 경관의 보전을 위해 완충지대를 적절히 설정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 a) “수변구역” 에 대한 정의(계곡, 천, 계류 등 포함여부 등)를 명확히 제시하고, 지표 상에 “수변구역” 이 나오는 경우 각각의 의미가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수변구역: 1.3/3.7/4.4) · a) “완충지대” 설정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 “광범위한 신규 조림” 이 해당 지표에 대한 예시로 적절한지 검토하고, 적절하다면 “광범위한 신규 조림” 의 범위를 제시

	b. 임도시공 및 사방사업은 해당 기술지침에 의하여 실시하고, 가급적이면 환경 친화적 공법으로 실시한다. c. 기계작업으로 인한 토사유출 및 산사태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작업시기 선정 시 주의를 기울인다.	제시	
4.2	산림작업이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산림경영계획에 반영하고, 산림작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산림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a. 필요한 경우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여 경영계획에 반영한다. b. 임업기계에 사용되는 연료 및 오일, 기타 화학물질은 관련 지침에 명시된 것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계작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생분해성 체인오일 및 유압식 액체 등과 같은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한다.	· 임업기계에 사용되는 연료를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 · a)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필수로 필요한지 검토 · b)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를 “가능한 한” 으로 수정	
4.3	산림경영단위 내에 존재하는 아래와 같은 입지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위치와 수계망도를 지도상에 표시하여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지역의 기초 현황자료를 문서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a. 토양 및 수자원 보호를 일차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지역 (침식이 일어날 수 있는 토양, 하천으로의 과도한 침식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 등) b. 급경사지 혹은 침식 가능성이 예보된 지역 c. 임도시공, 사방사업 등의 산림토목작업 시행 예정지	· “수계망도” 라는 용어를 “수계(망)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 라고 수정 – 일반적으로 수계망도를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지형도 상에 수계에 대한 레이어가 있는 형태임	
4.4	수자원 보호기능을 제공하는 산림을 특별히 관리하고, 수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물질의 사용, 부적절한 무육 방법의 이용을 피하여야 한다.		· 확인사항에 “완충지대와 관련된 지침” 제외 여부 검토 – 현장에서 수자원 관리를

	a. 수자원의 양과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림경영 시업은 최소화한다. b. 수변구역에는 토양침식 방지 및 수질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이를 지도상에 표시한다.		위해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경영계획서 등에 반영하기 위한 지침이 미흡하여 실행하기 어려운 실정
5.2	산림경영단위 내의 산림관리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경영 의지를 표명하여야 한다. a. 조림계획 시 이산화탄소 고정능력을 향상시키는 수종의 식재를 고려한다. b. 산림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능한 화석연료 사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벌채 시 발생되는 폐잔재 및 간벌재를 적절히 재활용한다.	· a) “이산화탄소 고정능력을 향상시키는 수종의 식재를 고려한다” 는 내용 검토 – 해당 지표는 “적지적수의 원칙을 적용하여 재조림” 하라는 지표(2.2 d)의 내용과 다소 상충이 될 수 있음 · b) 산림작업 시 “화석연료” 사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지표상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 · b) 벌채 시 발생되는 폐잔재 및 간벌재 를 재활용하는 것이 작업현장에 쌓아두고 거름으로 쓰는 것을 포함하는지의 여부 검토	· 확인사항에 “수종에 따른 이산화탄소 고정능력 평가 기록” 이나 “화석연료에 대한 친환경성을 고려한 기록” 은 실제 현장에서 실행하기가 어려우므로 삭제하고, 이에 대한 의지 표명을 확인하도록 수정
6.1	산림경영계획 상에 사회 경제적인 산림의 다목적 기능에 대하여 존중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경영목표로 삼고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사회 경제적인” 이라는 용어가 필요한 사항인지 검토	
6.2	산림작업은 산림 자원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과 범위 내에서 사회 경제적 기능 및 휴양기능과 심미적 가치를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산림 자원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과 “사회 경제적 기능, 휴양기능 및 심미적 가치를 고려하는 것” 중에 우선순위 결정(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의견, 원문 확인) – 산림작업 시 산림의 본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의 이익을 추구해야한다는 의미인지 등 검토	

6.4	지역주민이 문화적・생태적・경제적・종교적으로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 및 장소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마을 보호수, 묘지, 성황당 등 지역주민이 문화적・생태적・경제적・종교적으로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 및 지물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의 상호합의를 통해 확인하여, 현지에서 적절하게 구획・관리한다. b. 위와 같은 지역 및 지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한다.	・a) 묘지는 「분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삭제 (원문 확인)	
6.6	산림경영주체 및 산림노동자 등 피고용인은 산림경영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		・지표해설 상에 “산림교육원”을 교육기관으로 한정짓지 않도록 수정
6.7	산림경영에 있어 경영규모에 따른 지역사회의 효율적인 참여를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a. 국・공유림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의사결정, 자료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와 같은 산림경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기록을 남긴다. b. 산림과 인접한 지역사회의 산림경영정보 및 노동력 수급의 확보를 위하여 지역사회를 적극 활용한다.	・a) 사유림을 제외시킨 이유에 대한 재검토 ・a) “협의회”를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가 참여 가능한 회의” 등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도록 수정	
6.8	이해관계자들 간의 효율적인 인센티브 배분 및 비용과 편익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a. 국・공유림의 경우, 해당 산림경영단위 내의 이해당사자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산림경영 관련 정보를 열람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 b. 국・공유림의 경우, 산림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과 편익의	・a)b) 사유림을 제외시킨 이유에 대한 재검토 – 사유림의 경우 함께 산림을 소유하는 산주나 산림경영에 함께 투입되는 산림경영주체가 이해관계자로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표해설 부분에 명시하여 이들이 수익을 공정하게 배분한다는	

	발생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됨을 원칙으로 한다. c. 이해관계자 간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분배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한다. d. 이해관계자 간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한다.	사례 등을 추가 제시	
6.9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필요한 연구 활동 및 자료 수집에 기여하거나, 다른 기관에 의해 수행된 관련 있는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연구활동 지원이 강제사항인지 검토 후 수정(원문 확인)	
6.10	산림경영주체와 산림노동자는 기본적인 ILO협약 및 국내 노동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산림경영으로 발생하는 고용 관련 내용을 문서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a. 모든 계급의 직원 채용, 배치, 교육, 훈련, 승급 및 해고와 관련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b. 모든 산림노동에 있어 ILO에서 규정한 아동 및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는다. c. 노동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규정을 준수하며, 국내의 물가 수준을 반영한 임금 책정 시스템을 갖춘다. d. 산림노동자의 고용에 관련된 법규 및 취업규칙 등을 상비한다. e. 개별 산림노동자의 고용 계약서를 상세히 기록하여 보관하고, 산림노동자가 계약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도록 한다. f. 산림노동자의 고용 계약서에는 노동법에서 규정한 노동자의 모든 권리가 동등하게 부여된다는 것과 재해로 인한 보상 규정 등을 명시한다. g. 고용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한다.	· h) “산림노동자를 고용하는 계약자는 관련 법률의 요구사항에 따라 노동자의 안전을~” 로 수정 – 대규모와 소규모 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없고, 국내 사회보험제도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가입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h. 대규모 사업자의 경우, 산림노동자를 고용하는 계약자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도 가입에 노력한다. i. 산림노동자는 산림작업과 관련한 교육(응급조치, 안전교육 등)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산림경영주체는 이의 이행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한다. j. 산림경영주체는 산림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안전지침,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을 제공한다. k. 산림노동자는 작업 전 반드시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있으며, 임업장비의 사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다.		
7.1	국내에서 시행 중인 모든 관련 법 및 규정과 한국이 가입한 모든 국제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모든” 이라는 용어 삭제 –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필요한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한정하는 것으로 문구 조정 · “입증하여야 한다” 대신 “준수하여야 한다” 정도의 선언규정으로 수정	· 국내 법과 국제협약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입증 방법 등을 지표해설 상에 제시
7.2	산림경영주체 및 산림노동자 등 산림경영과 관계되는 인력은 산림경영과 관련된 법 및 규정에 대하여 제대로 숙지하여야 한다.	· “산림경영과 관련된 법 및 규정” 이라는 광범위한 표현 대신 필수적 사항에 대한 명시하여 구체화 – “산림경영과 관련된 법 및 규정” 이라고 포괄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있어 현장의 산림노동자가 이를 제대로 숙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산림노동자에게 해당되는 안전 · 환경 · 화학물질 취급 등 필수적으로 요하는 사항만을 숙지하는 방향으로 구체화 필요	